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9일, 송재봉의원 등 19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8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9.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재봉의원)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요금을 '주요 경비'로 정의하고, 주요 경비에 대하여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법[1]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2]'이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3]하고 있음.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인 '주요 원재료[4]'는 수탁·위탁거래에서

1) 현행법 개정(법률 제19176호, 2023.1.3. 개정, 2023.7.4. 시행)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하며,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5]되나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6]나 운송에 대한 요금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3년간 6차례 변동이 있었는데[7], 2023년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약 29.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참고자료 4)[8].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9]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에너지 요금이 급등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으로서는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자료[10]에 따르면, 열처리 업

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9

6)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전기요금 구조(중소벤처기업부)>
○ 현재 전기요금은 고정된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
* (기후환경요금) RT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 부과('21년～)
(연료비조정요금) 석탄, 천연가스,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 반영('21년～)
○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을) 기준 최근 10년간 총 7차례, 최근 3년간 6차례 변동
* (산업용 전력 변동 시점) '13.11월, '21.1월, '22.4월, '22.7월, '22.10월, '23.1월, '23.5월, '23.11월

8) 원유, LNG, 석탄 등과 같은 연료의 국제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이라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함. 2022년 중반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확대 및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급증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이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음(박충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22호, 2023. 8, pp.1-2).

9)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체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20% 수준으로 나타남(참고자료 3)[11].

또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제조업계[12]와 같이 운송이 제조공정상 필수 과정이면서 그 비용이 제조원가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운송 단가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참고자료 5),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및 운송 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의 정도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당초 납품대금 연동 제도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임. 에너지 및 운송 요금은 주요 원

---

10) <뿌리업종 조합원사 에너지비용 분석>
- ㅇ 추진배경: 중소 뿌리업체의 지속적인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 건의와 다르게 국가승인통계상 중소기업의 전기료 사용 비중이 낮은 원인 및 실태 분석
- ㅇ 조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ㅇ 조사기간: ‘24. 4. 8 ~ ’24. 4. 15
- ㅇ 조사방법: CRETOP(한국평가데이터) 정보를 통한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 조사
- ㅇ 조사대상: 5개 뿌리산업 회원사(673개) 중 283개사 선정

11) 다만, ‘2023년 뿌리산업 실태조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4.1) 결과에서는 6대 기반 공정기술 업종에서 제조원가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비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제조원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기준(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으로 산출되어 업종별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유리하나 기업규모(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12) 레미콘 산업의 유통구조(한국레미콘공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rmcia.or.kr/sub03/04.php) 일부 발췌, 최종검색일: 2024.11.13.)
- 물적 유통이 중요한 산업: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하여 일정한 공정을 거친 다음, 곧바로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90분 이내에 건설현장까지 운송하여 타설하여야 하므로, 레미콘산업은 제조업과 운송업의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장생산능력이 크다고 하여도 레미콘을 운반하는 능력이 적을 경우에는 출하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레미콘 산업에서는 생산능력보다 레미콘트럭의 수송능력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 물적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산업에 비하여 높음: 레미콘 판매단가 중 레미콘 믹서트럭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로 높으며, 시멘트, 골재의 운반 및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면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또한 레미콘 믹서트럭이 공장 건설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소유운영에 따른 자금소요가 많으며, 도시권의 교통환경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낮아지고 물적 유통비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물품등의 제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원가 결정요소에 해당함.

따라서 에너지 및 운송 요금이 납품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업종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 변동과 별개로 해당 요금의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및 운송 요금에 대하여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이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 취지,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제도를 실제 운영·집행하여야 하는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원가 중 에너지 및 운송 관련 요금 비중이 높은 수탁기업에 대한 경비 인상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하나,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

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13]을 진행 중이며, 향후 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 관련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에너지 요금의 경우 원재료에 비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14],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적용 가능한 납품대금 조정협의[15]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13)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연구용역(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 용역내용
- 에너지 가격 변동 양상,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현황 등 조사 및 검토
  * 제조원가명세서상 명확한 전력비 위주로 검토하되 「에너지법」상 그 외 에너지 비용(연료, 열 등) 고려
-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의 적합성 검토 및 제도의 운용 방안 모색
-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방안 관련 고려사항 점검 및 시사점 제시
○ 수행기한 : ~ '24.12.13

14) 에너지요금의 경우 전기위원회 등 공적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가격 등이 결정되므로 온전히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면서 수시로 바뀌는 성질의 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임.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15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53호,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34호,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44호)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